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고양시 주민지원협의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한다.) 제17조의 2·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고양시 관련 조례를 원만히 이행하여 주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삶의 터전인 기본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의체의 사무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15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사무동 건물내에 둔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사업 수립)

위원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주민지원기금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장(이하 “고양시”라 한다.)과 협의한다.

제5조 (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폐촉법의 개정 또는 정관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기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2장 위원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① 협의체 위원은 총 15명 이내의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가의 경우 타 지역 주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4. 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차기 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등의 권리)

- ①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 ② 협의체에 참여하여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효력)

이 정관은 민·형사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제9조 (위원회 구성)

- ①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감사 1인
 - 4. 사무국장 1인
- ③ 임원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임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된다.
- ⑤ 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즉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9조의1(위원의 해촉)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 할 수 있으며 해촉 대상 임원은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21. 4. 7>
- ⑥ 임원의 권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1(위원의 해촉) <개정 및 제정 2021. 4. 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정관 및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 5.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연속하여 3회이상 불참할 때(단, 회의 前 불참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유선통보 후 3근무일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1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제정 2021. 4. 7>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 및 감사는 협의체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 협의체 동의를 받는다.

제11조(협의체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체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을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8. 5>

1. 환경상 영향 조사
2. 오염물질의 측정
3. 주민감시원의 추천
4. 정관 개정안의 제안
5.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6.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의 50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7.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8. 제9조 제7항의 위원 해임
 9.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회의

제12조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개정 2020. 4. 7>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해 회의를 소집요구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
구성원 중 최고 연장자 순위로 한다.
- ⑥ 회의는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 ·
부 동수에 대한 의결은 부결로 결정한다.)<개정 2020. 8. 5>
- ⑦ 협의체 의결은 제11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⑧ 협의체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인근 주민 등이 열람을 요구 할 때에는 응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재 선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의사무를 주관한다.
- ④ 감사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유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회의)

- ① 임시회의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때 위원장은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임시회의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 의무 책임 등)

- ①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과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고양환경 에너지시설 인근 지역 주민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시 수행 할 의무를 진다.
- ② 위원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음의 한도액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홍보활동비와 주민의견 수렴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한다.
 - 1. 위원장 수당 : 매월400,000원
 - 2. 부위원장 수당 : 매월200,000원
 - 3. 사무국장수당 : 매월150,000원
 - 4. 감사수당 : 매월150,000원
 - 5.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6. 반입쓰레기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샘플링에 참여시 건설부문 시중노임단 가(보통인부)로 지급한다. (단, 참여수당은 지원사업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 8. 5>

제16조 (사무보조 및 수당)

- ① 협의체에 사무보조 1인을 둔다.

- ② 사무보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운영경비 지출시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7>
- ④ 활동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당 지급 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① 주민지원기금
- 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③ 기타 수익금

제18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

예산범위 내에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20조 (회계연도)

협의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